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설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
종합 평가 및 공개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2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662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시설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 종합 평가 및 공개 (안 제36조)	3

I.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662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2. 5.

다. 회 부 일 : 2026. 2.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구간만 보수하는 데 그쳤음.

그런데 사고 직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는 관리업자의 점검 실적과 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시하여 관계인이 걱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등).

3. 검토의견

가. 시설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 종합 평가 및 공개 (안 제36조)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토대로 해당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u>대행실적</u> 을 공개할 수 있다.	⑤ ----- ----- ----- ----- ----- <u>대행실적</u>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 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 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u>대행실적</u> 등 의 공개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⑥ ----- <u>제5항까지에</u> ----- ----- ----- <u>대행실적</u> , <u>평가결과</u> 등의-----

현행	개정안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¹⁾이라 함) 및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²⁾ 점검 또는 진단 등의 종류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³⁾, 안전점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기관⁴⁾, 국토안전관리원⁵⁾을 통해 임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구분 및 대행기관 】

구 분		조사 목적 및 방법	실시 의무	대행기관*6)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시설물의 <u>상태를 판단</u> 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u>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u> 할 수 있는 수준의 <u>외관조사</u> 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리주체 (일부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	안전점검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 관리원
	정밀 안전 점검	-시설물의 <u>상태를 판단</u> 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u>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u> 하며 시설물 <u>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u> 할 수 있는 수준의 <u>외관조사</u> 및 <u>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u> 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시설물의 <u>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u> 하고 그에 대한 <u>신속하고 적절한 조치</u> 를 하기 위하여 <u>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u> 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 관리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 분	조사 목적 및 방법	실시 의무	대행기관*6)
긴급 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u>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u>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관리주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시 가능)	안전점검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 관리원
성능평가	-시설물의 <u>기능을 유지</u>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u>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u>	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 관리원

*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대행 가능
안전점검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대행 가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점검 및 진단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 제36조⁷⁾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대행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⁸⁾을 통해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https://www.fms.or.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업체명과 대행건수 및 금액 등의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동 정보들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대행기관 및 대행실적 공개(예시)】

(단위: 건, 개소, 백만원)

업체명	합계		건축		토목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								옹벽 및 사면		기타		
													소계				댐								하천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생 략)	2	1,238	2	1,23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생 략)	7	1,006	0	0	7	1,006	0	0	7	1,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생 략)	7	975	0	0	7	975	0	0	7	97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생 략)	1	622	0	0	0	0	0	0	0	0	0	0	1	622	0	0	0	0	1	622	0	0	0	0	0
(생 략)	4	556	0	0	3	101	3	101	0	0	0	0	1	455	0	0	0	0	1	455	0	0	0	0	0

※자료: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정보공개서비스 -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주- 업체구분: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준일자: 2026.1.1.~, 실적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⁹⁾ 「전기공사업법」,¹⁰⁾ 「소방시설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동 법률들은 각각 적정 또는 적절한 건설사업자·건설사업관리자·전기공사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소방청장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시공능력·건설사업관리능력·전기공사시공능력·소방시설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입법례들과 같이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과 관련해서도 대행기관의 능력을 평가하여 및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36조에 따른 대행실적 공개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9)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0) 「전기공사사업법」

제31조(공사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적정한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 등은 건설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수수료를 부담¹²⁾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등록된 모든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신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공시를 통해 주로 우수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전기공사업법」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것으로 생각되는바,

개정안에 따른 평가 및 공개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평가 대상기관의 신청 필요 여부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18조¹³⁾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준 향상과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대부분(2020~2025년: 72.4~82.3%)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8조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수정 의견으로 제출하였음.¹⁴⁾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현황 】

(2025.12.31.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보고서 수	35,036건	40,469건	41,794건	41,993건	38,893건	41,342건
보고서 평가 수	25,366건	30,936건	32,375건	33,184건	29,854건	34,040건
보고서 평가 비율	72.4%	76.4%	77.5%	79.0%	76.8%	82.3%
부실 보고서 수	1,760건	1,731건	1,455건	1,144건	823건	927건
부실 보고서 비율	6.9%	5.6%	4.5%	3.4%	2.8%	2.7%

※자료: 국토교통부

14) 국토교통부는 2025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개정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중 '우수 점검·진단기관(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적정한 대행기관 선정을 위해 '우수 점검·진단기관'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신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등에 일정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른 신규 제도 도입과 현행법 제18조에 따른 제도 활용 방안 간에 소요 기간 및 비용, 활용도 및 효과성 등 측면을 비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91